

##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1. 주식회사 효성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의거 2024년 6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해당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포함, 이하 같음),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주식회사, 효성토yota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Hyosung Holdings USA, Inc., Hyosung Global Logistics Vina Co., Ltd(이하 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주식회사, 효성토yota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Hyosung Holdings USA, Inc. 및 Hyosung Global Logistics Vina Co., Ltd를 총칭하여 "분할대상 자회사들")의 주식 소유를 통해 분할대상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사업부문 및 (ii) 국제물류주선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물류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사업부문 및 물류사업부문을 총칭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효성을 설립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은 주식회사 효성에 존속·유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한 후 주식회사 효성은 2024년 7월 1일 이사회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분할보고주주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1. 분할의 내용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됨.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하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함.
- (2)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본건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
- (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주식병합 특례 절차에 따라,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8179485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고,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 후 분할존

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증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취득함

(4) 분할 후 주식회사 효성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각각 16,740,407주, 86,725,490,000원 임.

[본건 분할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비율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효성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0.8179485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효성	분할대상 자회사들의 주식 소유를 통해 분할대상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사업부문 및 국제물류주선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물류사업부문	0.1820515

## 2. 분할의 진행경과

일자	내용
2024년 02월 23일	이사회 결의 (회사분할 승인)
2024년 06월 14일	주주총회 결의 (분할계획서 승인)
2024년 07월 01일	본건 분할 기일
2024년 07월 01일	이사회 결의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

- 공고일: 2024년 7월 1일(월)
- 공고방법: 상법 제289조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https://www.hyosung.com>)

2024년 7월 1일

주식회사 효성 대표이사 조현준, 김규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